

# 방 화 관 리 규 정

제정 1993.10. 9 개정 1997. 4. 1  
개정 1994. 3. 1 개정 1998.12.24  
개정 1994. 6.18 개정 2001. 6. 1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방화관리에 철저  
를 기하고 화재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방지 및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 구성원(교원, 직원 및 학생) 및 교수아파트 입주자에  
게 적용한다.

제 3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험물 : 소방법이 정하는 발화성, 인화성 물질 및 물품
2. 소방대원 : 본 대학의 자위소방대의 구성원

## 제 2 장 조직 및 임무

제 4 조(조직) 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방화관리자를 둔다.

② 각 실별 화기책임자를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화기정책임자 : 각 부서장, 주임교수
2. 화기부책임자 : 실별책임자

③ 산불방지 및 방화순찰을 위하여 방화순찰원을 둘 수 있다.

④ 소방대원은 교직원, 학생 및 교수아파트 입주자로 구성한다.

⑤ 화재사고시 화재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심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이에  
대하여는 시설관리규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.(단, 교수아파트의 화재사고  
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아파트자치위원장을 포함한다)

제 5 조(임무) ① 방화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소방법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2.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업무
3. 주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

4. 소방시설 유지 보수

5. 기타 소방관련 업무

② 화기정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, 감독하여야 한다.

③ 화기부책임자는 화기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
1. 화기 사용 및 위험물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2.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관계 기관에 연락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.

3.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의 반·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
4. 실내에서의 위험물 사용 및 보관과 전열기구의 사용은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
5. 각 실(과)에 배치된 소화기를 유지관리하고, 손상실시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 보고한다.

④ 소방대원은 화재 및 교육 훈련시 부여된 개인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장 화 재 예 방

제 6 조(교육훈련) ① 본 대학 구성원 및 아파트입주자는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.

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 및 훈련 불참자 또는 화재발생시 동원거부자는 본 대학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7 조(순찰) 순찰은 교내순찰과 산림순찰로 구분하며, 교내순찰은 야간 및 교내의 경비 업무와 병행하며, 산림순찰은 건물외곽 및 순찰로를 따라 실시한다.

제 8 조(화재보고) ① 화재를 발견한 자는 별표1의 보고계통에 따라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계통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9 조(자위소방대 편성) ① 화재의 발생 또는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위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자위소방대 편성은 소방계획서에 따른다.

## 제 4 장 소방시설물 유지보수

제10조(소방시설물 유지) 각종 소방시설물의 설치, 보수 및 운용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.

제11조(소방시설물 공사) ① 소방시설물에 관한 공사는 시설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.

② 소방설비의 정비 및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은 소방검정품 및 K.S 규격품을 사용하고, 검수 및 계약은 본 대학 규정에 준한다.

제12조(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) ①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점검, 종합정밀점검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실시하며, 월간점검은 화기책임자가 시행한다.

② 소방시설의 정비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유자격자가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건물의 용도 변경 및 개조공사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방화관리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.

④ 소방시설은 점검 정비결과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방화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, 개조 또는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정지,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기계, 전기, 대보수공사시 용접기 및 화기의 사용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용 소화기를 배치 후 실시한다.

제13조(위험설비 유지관리) ① 위험물 제조, 저장 및 운반취급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고압가스의 제조, 저장 취급 및 관리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.

③ 각 실험실 등에 사용하는 위험물 및 가스는 실별화기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며, 실별화기책임자는 사고로부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.

## 제 5 장 상 별

제14조(상별) ① 방화관리자는 대학의 구성원중 방화관리와 소방활동으로 대학의 재산보호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관련부서에 표창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화관리에 소홀히 하여 화재 등 재해가 발생되거나 또는 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본 대학 구성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그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준 용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규를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0월 9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 개정,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6월 18일 개정,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12월 2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(별표 1)

### 화재보고 계통도

